

영국의 온라인 불법파일 공유 대처를 위한 새 정책

법제연구팀 양혜원 선임연구원
(haeya@socop.or.kr)

I. 序

2008년 7월 24일 영국 정부는 온라인 불법파일 공유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및 관련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제출문('Consultation document on legislative options to address illicit P2P file-sharing')¹⁾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영국의 주요 6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이하 ISP), 음악 및 영화 저작권협회 및 정부가 온라인 불법파일 복제 방지를 위한 '역사적 산업계 협약' MOU를 체결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이 의견제출문은 영국 정부가 2006년 말 발표된 'Gowers 지적재산권 조사보고서(Gowers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중 P2P 불법 이용에 관한 '제안 39'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그 이행 과정의 일환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의견제출문에서는 Gowers의 제안 내용에 따른 정부 제안 방안 이외에 P2P 불법 이용에 관한 여러 다른 방안들에 대한 의견도 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의견제출문에 관한 의견을 2008년 10월 30일까지 받는다.

아래에서는 여기까지 전개된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영국 정부 정책의 배경이 된 관련 Gowers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정부 제안 방안의 근간이 되는 산업계 MOU 및 이번 의견제출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II. Gower 보고서의 주요내용

2005년 12월 영국 재무부 장관은 Andrew Gowers²⁾에게 영국의 지적재산권 체계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06년 12월 6일 'Gowers 보고서'로 알려진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전문은 영국 기업규제개혁부 홈페이지 <http://www.berr.gov.uk/files/file47139.pdf> 참조.

2) Reuters 특파원, Financial Times 편집장 등을 지낸 영국의 저널리스트이며, 현재는 미국계 투자금융회사인 Lehman Brothers 유럽지사의 기업 통신 및 홍보 책임자로 재직 중이다.

보고서에서 Gowers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적재산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몇 가지 실리적인 정책 제안을 하였다. 제안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방지 및 권리 보호 집행 보장
- 집행제도의 비용 감소 및 절차 단순화
-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개인 및 기관의 콘텐츠 이용 활성화

특히 저작권자들은 P2P 파일공유를 통해 음악이나 영화의 불법복제 파일을 교환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Gowers는 보고서에서 P2P 영역의 저작권 침해는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산업계(저작권자 및 ISP)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나 협력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Gowers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제안 39 : 불법복제에 관련된 이용자를 차단·방지하기 위한 ISP과 저작권자들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의 산업계 협의 관찰을 제안한다. 만약 2007년 말까지 이 방법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관련법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하여 2006년 12월 사전 예산보고서에서 Gowers 보고서의 제안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III. 불법복제 대처를 위한 산업계 MOU

'불법복제 대처를 위한 산업계 MOU(Joi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an approach to reduce unlawful file-sharing)'는 영국의 주요 6개 ISP(Virgin Media, Sky, Carphone Warehouse, BT, Orange 및 Tiscali), 영국음반산업회(BPI), 영화협회(MPA) 및 3개의 관계 정부 부처(기업규제개혁부, 혁신대학기술부 및 문화미디어체육부)가 서명하였고, Anti-Film Theft Taskforce³⁾가 보증하였다.

목적

이 MOU의 목적은 2~3년 이내에 P2P 파일공유를 통한 저작물 불법복제율을 현저히

3) Anti-Film Theft Taskforce는 UK영화위원회, 전산업마케팅(AIM), 영국비디오협회(BVA), 영화상영자협회(CEA), 저작권불법복제방지연합(FACT), 영화배급자협회(FDA), 영화교육회, IP홍보산업신탁, 영화협회(MPA) 및 영화·TV제작자연맹(PACT)으로 구성된 시청각물 기관들의 협동체이다.

낮추고 저작물 침해에 대한 대중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원칙

위의 목적을 위해서 MOU에는 5가지 원칙을 정립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향후 불법복제 대처를 위해 산업 내 협동을 통한 자체 해결이 가장 적절한 방법임에 공감한다. 배경 법규가 시행되면 이 방법은 산업 내 해결책으로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이며 제도의 관대하고 유연한 운영이 보장될 것이다. 따라서 서명자들은 상호 협동하며 Ofcom(Office of Communication, 영국통신청)이 동의한 실행규범(codes of practice)에 따를 것을 합의한다.
2. 이용자들이 창작물 생성과정의 가치 및 새로운 저작물 창작을 위해 투자되는 시간·자원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존중하고,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의 공유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 창작 산업의 주체인 서명자들은 협동한다.
3. 많은 온라인콘텐츠서비스가 불법복제 및 불법공유를 위한 이용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친소비자적인 상업경쟁력·구매력 있는 패키지 콘텐츠 개발을 통해 경쟁해야 함을 서명자들은 동의한다.
4. 서명자들은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의 계정이 저작물 불법공유에 이용되어 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한다. 우선 서명한 ISP들은 매주 음악 저작권자들에 의해 통보된 불법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한 인터넷 가입자들 1000명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3개월 동안의 시범 기간을 갖는다. 이 시범기간의 자료에 대한 ISP들의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경고장 발부 수 증가, 콘텐츠 종류 확대 및 그 수인 정도에 대해 Ofcom과 서명자들은 합의할 것이다.
5. 반복적인 침해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Ofcom의 워킹그룹에 서명자들은 참여한다. 워킹그룹은 4개월 안에 통신량 관리 또는 필터링 같은 기술적 조치 및 콘텐츠 관리정보 삽입 등의 해결책 및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아가 저작권자들은 사건 침해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소추도 고려할 것이다.

실행규범(codes of practice)

서명자들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실행규범을 정립한다.

- 증명 기준
- 침해 혐의자에 대한 대응
- 반복 침해자에 대한 대응
- 잘못된 파일공유 주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 이용자들의 항소 방법

위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Ofcom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IV. 온라인 불법파일 공유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제출문(consultation document)의 주요내용

저작권자들은 P2P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다. 현존하고 있는 대응책은 기간이 소요되고, 고 비용이며 매우 비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저작권자들은 ISP와 협력하여 P2P 불법복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P2P 불법복제를 대량으로 행하는 이용자들은 ISP 및 잠재적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역폭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 접근 방법은 ISP들의 이해에도 맞는 것이다.

ISP와 저작권자들 사이에 자발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영국 정부는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 도달을 위해 시간 및 기회를 주었다. 한편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 합의가 적법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ISP 및 저작권자들은 산업계 협력 체계를 위한 MOU 안에 몇 가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이 접근 방법은 산업계의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단기간 내에 산업 전반에 걸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불가능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 문제, 전자상거래 및 저작권법을 포함한 복잡한 환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되고 있는 방안들은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고려하는 방안들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고자 한다. 의견 제출은 더 나은 방안 마련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다음 내용의 방안들에 관하여 의견을 구한다.

1. 정부 제안 방안 :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공동 규율 접근 방법이다.

- 산업계 자체 규율 접근 방법으로, MOU에 규정된 원칙 하에 저작권자와 ISP에 적용되면서 교육 및 홍보 사항, 이용자에 대한 적정 가격의 다양한 포맷 콘텐츠 제공 및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경고에 관하여 규율하는 실행규범을 만든다. 자체 규율 접근 방법은 실행규범에 대한 동의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검토된다.
- 기관은 ISP 및 저작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워킹그룹을 형성하여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워킹그룹은 통신량 관리 또는 필터링 같은 기술적 조치 및 콘텐츠 관리정보 삽입 등의 해결책을 검토하고, 심각한 침해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대처 방안도 검토한다. 워킹그룹은 4개월 내에 정부에 보고하고, Ofcom은 워킹그룹이 제안한 방안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침해자에 대응하는 실행규범을 마련한다.
- ISP에게 저작권자에 의해 P2P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자라고 주장된 가입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의무를 부과한다. 이 의무는 제정되는 실행규범 및 반복 침해자에 대한 대응책에 따른다.

2. 기타 방안

- 방안 A1 : 법원의 명령 없이도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권 침해 IP 주소에 관한 개인 정보를 ISP가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 저작권 침해 절차를 정비한다.
- 방안 A2 : 저작권자에 의해 P2P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자라고 주장된 이용자에 대해 ISP가 직접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 방안 A3 : 제3기관을 두어 저작권자에 의해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ISP에게 개인 이용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하거나 제3기관이 직접 개인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한다.
- 방안 A4 : ISP에게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필터링 장치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ISP가 자체적으로 필터링 장치를 설치하여 저작권 침해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도록 한다.